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. 4. 7 선고 2019가단34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417,808원 및 이 중 22,000,000원에 대하여 1999. 5. 27.부터 2009. 11. 27.까지는 연 2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장수영

별지